

제416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7월9일(화)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권오혁 외 105,300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09)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서류제출요구의 건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 간사 선임의 건(추가)
-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추가)

상정된 안건

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권오혁 외 105,300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09)	3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유상법 위원 외 6인 서면동의)	5
2.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26
3.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서류제출요구의 건	26
4.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26
5. 간사 선임의 건	27
6.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7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청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보임이 있어 알려 드립니다.

지난 6월 26일 자로.....

마이크 볼륨 좀 올려 주세요.

법사위 음향시설이 너무 노후화돼서 음향시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수선을 마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26일 자로 박형수 위원님, 우재준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박준태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께서 보임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새로 보임하신 위원님들과 보임 후 처음으로 회의에 출석하신 광규택 위원님께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규택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택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산 서구동구 출신 광규택 위원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태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박준태 위원입니다.

대한민국 입법 최종 관문인 법사위에 보임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법사위원으로서 바람직한 역할과 의무가 무엇인지 잘 새기면서 성찰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마지막으로 조배숙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조배숙 위원** 법사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비례 조배숙 위원입니다.

법사위는 국회에서도 제일 최종적인 의결을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다른 위원회에 모범이 되는, 상대를 존중하고 또 예의를 지키면서 화기애애하게 이끌어 가는 그런 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청원과 관련된 안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안건명은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심사하는 안건, 검토보고서 등은 위원님 의석 노트북에 실려 있습니다.

오늘 상정하려고 했던 의사진행 안건은 1항부터, 1·2·3·4항이었는데 국민의힘 위원님들로부터 서면동의서가 들어왔습니다. 이 서면동의서는 간사 선임과 소위원 선임에 대한 서면동의인데요. 이것은 3분의 1 이상으로 들어오면 국회법 71조 및 77조에 따라 간사 선임의 건, 소위 개선의 건 등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사일정 5항, 6항으로 해서 처리를 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미리 들어왔으면 저희가 진행순서지, 시나리오를 쓰기 전에 의사일정 앞 순위에 배정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직전에 왔기 때문에 이것은 후순위 안건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위원장 정청래** 일단 상정해 놓고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아니아니, 먼저……

○위원장 정청래 일단 상정하고 하겠습니다.

충분히 드릴게요.

○송석준 위원 아니아니, 안 돼요.

○유상범 위원 그게 아니라……

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권오혁 외 105,300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09)

(14시04분)

○위원장 정청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님, 안건 상정에 문제가 있어요. 간사 선임을 먼저 하시기로……

○위원장 정청래 좀 앓아 주세요. 앓아 주세요.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청래 충분히 드린다니까요.

그러면……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간사 선임이 우선이지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사전에 찾아뵌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늘 간사 선임 먼저 하고 그리고 회의를 진행한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위원님들, 다시 한번 주의 상기시켜 드립니다.

○송석준 위원 우리 상임위원회가 정상화됐는데 간사가 없이 어떻게 안건 합의를 합니까?

○위원장 정청래 위원님들의 발언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드리지 않았어요.

○송석준 위원 그러면 앓아서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발언권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송석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이 안건은 지난 6월 20일 공개 후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법 제123조에 따른 국민동의 청원으로 성립되어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9일 기준 동의자 수가 약 133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세요!

위원장님! 간사 선임 먼저 하자고요!

○위원장 정청래 해당 청원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심사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 본연의 책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대체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박준태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검토보고해 주세요.

- 박준태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 위원장 정청래** 드린다니까요.
- 유상범 위원** 아니, 지금 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의사일정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 박준태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고 하십시오.
- 위원장 정청래** 자, 검토보고해 주세요.
- 송석준 위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발언 먼저 허용해 주세요.
- 위원장 정청래** 위원장이 발언권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발언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 박준태 위원** 발언권을 주시면 됩니다.
- 유상범 위원** 발언권을 달라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정청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세요.
- 박준태 위원** 의사진행발언도 못 하게 하시는 위원장이 어디 있습니까?
- 전문위원 이화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송석준 위원** 전문위원님, 중단해 주세요.
- 유상범 위원** 전문위원! 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화실** 동 청원은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 송석준 위원** 행정실장, 회의 진행을 위원님 우선으로 해야지 전문위원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 서영교 위원** 왜 이렇게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그러세요?
- 송석준 위원** 방해라니요!
- 회의를 정상적으로 하려면 먼저 간사 선임이 되어야지요! 그다음에 안건 합의를 하고……
- 전문위원 이화실** 청원에서 요청하는 탄핵소추와 관련하여 헌법 제65조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고, 대통령의 경우 그 상징적인 지위나 정치적인 안정성을 고려하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탄핵 사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 및 법률 위배 행위가 과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위배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국회법 및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이후 탄핵소추 및 심판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법제사법위원회는 탄핵소추 요건을 갖추어 발의되고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탄핵소추안의 조사 및 탄핵심판 청구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동 청원이 촉구하고 있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발의는 헌법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청되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정청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세요.

○송석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입니다.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유상범 위원 외 6인 서면동의)

(14시07분)

○위원장 정청래 의사일정 추가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의사일정 추가한다고요.

○송석준 위원 아니, 이렇게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게 어디 있어요?

위원장님, 존경하려다가 또 존경하고 싶지 않아요.

○위원장 정청래 국회법 71조 단서에 따라 의사일정 추가 동의의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 선임의 건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석준 위원 이의 있습니다.

○박준태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해 달라면서요?

○박준태 위원 왜 5항에 들어갑니까?

이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송석준 위원 발언 기회 좀 주시지요.

○위원장 정청래 의사일정 추가해 달라면서요?

이의 있습니까?

○송석준 위원 추가하는데, 제일 먼저 해야지요.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5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송석준 위원 5항이 아니라 1항으로.

○박준태 위원 5항으로 추가하는 데 이의 있습니다. 간사 선임 처리 먼저 하십시오.

○송석준 위원 먼저 간사 선임을 하고 나머지 안건을 처리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지금 1항은 먼저 상정이 돼 있어요.

○송석준 위원 우리가 나머지 안건을 논의 안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박준태 위원 간사 없이 어떻게 나머지 안건을 논의합니까? 여기 들어와 있는 여당 위원들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정청래 위원장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세요.

○유상범 위원 발언권을 주세요.

○박준태 위원 발언권을 주십시오!

○유상범 위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사일정…… 발언권을 주셔야지요.

○송석준 위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정청래 의사진행발언 3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송석준 위원 지난 첫 회의 때는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사전 회의 때 뺐을 때 참 분위기가 좋게 먼저…… 원래 간사 선임을 고의로 지연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오늘 간사 선임을 먼저 하겠다 그러셔서 상당히 당초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 우리 법사위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돌아가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지금 들어오면 바로 1호 안건으로 간사 선임을 하고 그리고 회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당연히 알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것을 올리시되 5호 안건으로 하신다는 것은 회의의 정상적인 진행과는 또 우리의 기대와는 정면 배치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 여야 합의로 안건도 상정을 하고 또 안건 순서도 정하고, 그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유상범 위원님을 간사로 지난 우리 첫 회의 때부터 추천을 드렸고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에 못 한 것을 오늘 최우선으로 간사 선임을 한 다음에 같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하기를 기대했는데, 이것을 5호 안건으로 넣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늦게 접수됐다고 이런 말씀 하시지만 접수가 늦게 됐어도 사안의 중요성 그리고 또 여야 간 원만한 합의에 의한 진행을 위해서 간사 선임을 먼저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1호 안건으로 간사 선임의 건을 좀 옮겨서 우선 처리해서 양당 간사가 정상적으로 선임된 가운데 또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같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간사 선임을 뒤 순으로 넘긴다면 바로 오늘 합의 정신 또 간사 선임의 의미가 퇴색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정말 위원장님, 간사 선임을 1호 안건으로 채택해 주셔서 간사 선임을 한 다음에 우리가 원만하게 우리 모든 안건 다 논의하면 되지 않습니까? 국민들께서 지켜보는 가운데 서로 격의 없이 논의하고 또 하고 싶은 얘기 할 수 있게끔 위원장님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김승원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 위원 지금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안건을 서면동의서 형태로 오늘 제출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미 오늘 1항부터 4항까지의 의사일정은 24시간 전인 어제 다 통보를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서면동의로 내신 것은 당연히 5항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절차에 따라서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신 것이고 그 절차를 따라 주시는 것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 늦은 안건을 위로 올리거나 그러면 앞의 안건을 또다시 다 수정하고 무효화시키는 그런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은 국민의힘 위원들께서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청래 유상범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유상범 위원 국회법 77조에 따라서 안건 상정해 주신 것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가 사실은 어제까지는 안건 상정을 기대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77조 해석을 보면 긴급 안건 상정 또 안건 순서 변경 모든 게 가능합니다. 이 본회의 규정을 준용했듯이 본회의에서도 회의 중에 긴급 안건이 상정되면 그 안건이 바로 진행이 됩니다.

김승원 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이 안건 순서 변경에 큰 어려움이 있다’,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게 총 4개 안건입니다. 4개 안건 처리를 논의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순서 변경한다고 해서 크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이 안건 처리에 있어서 입장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민주당 위원들이 기본적으로 다수입니다. 다수의 의견으로 이 안건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간사 선임의 안건을 상정하셨다면 오늘 논의되는 이 안건에 대해서 양 교섭단체 간 간사가 선임되고 그 이후에 이 안건 절차가 진행된다면 이 안건 절차에 따르는 간사 간 협의가 없다는 49조 2항 위반 문제도 얘기가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국회법 49조 2항에서는 위원장이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의사일정 및 회의 날짜 등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가 선임돼서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다시 거치고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이 안 그대로 진행할 수 있게 모든 게 절차상, 법적으로 가능한 상황에서 굳이 간사 선임을 5항으로 집어넣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다수당이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간사 선임까지 본인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이 내용을 먼저 진행하고 나서 뒤에 간사를 선임한다? 이것은 결국은 간사 선임을 해 줬지만 아무 의미 없는 간사 선임의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비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간사 선임 서면동의서가 들어와서 간사 선임을 하신다고 하셨으니 오늘 회의 절차의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간사 선임을 1항으로 두시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1항으로 긴급 안건 상정해서 순서 변경을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장경태 위원 의사진행발언 한 번만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장경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지요.

○장경태 위원 장경태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이 간사 선임의 건 상정도 개인적으로 반대하는데요.

전체회의 개회 24시간 전에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안건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이미 기획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선입선출원칙에 의해서 국회는 상의해야 되고 만약 안건의 순서를 변경해야 될 경우에는 변경에 대한 동의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법사위 의결도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이렇게 육여 넣기식의 새치기 안건 상정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힘 소속 곽규택 위원께서 지금 법사위에 보임하셨는데 무제한토론 과정에서 현재 우리 법사위원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에 대한 발언도 대단히 유의해야 하지만 해당 같은 상임위에 있는 위원에 대한 발언을 유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엄중히 꾸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무제한토론 과정에서 ‘특검법을 검토·심사하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 일부가 피고인, 피의자 신분으로 사적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위원 스스로 안건에 대한 표결이나 이런 발언을 회피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박지원 위원에 대한 서해 공무원 관련된 사건 또 이성윤 위원에 대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사건 또 전현희 위원에 대한 여러 추미애 의원님의 아들 관련된 사건 또 저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빙곤 포르노에 관련된 여러 의혹을 지적하시면서 저희 법사위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유감 표명이 없다면 그 안건 상정 또한 저는 반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진정으로 이해충돌 걸려면 변호사 시절 수임했던 사건 제가 하나하나 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가 그렇게까지 명예를 훼손하지 않잖아요. 아니, 아동학대 사건, 추행 사건 이런 사건 다 일일이 거명해야 됩니까, 제가? 그러지 않도록 법사위원에 대한 명예를 존중하고 최소한의 유감 표명이 있어야지만 저는 간사 선임의 건도 상정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 사보임 조치를 포함해서 위원장께서 엄중하게 꾸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만하시지요, 이제 2 대 2로 하셨으니까요.

○송석준 위원 동료 위원에 대해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장경태 위원 아니, 저희 불렀으니까요. 무제한토론 할 때 하셨잖아요.

○곽규택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본인의 신상과도 관련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을 계속하다 보면 실제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 의사진행 방해 발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사진행발언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하다고 보고요. 좀 양쪽에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꼭 좀 받아 주십시오, 위원장님.

○서영교 위원 전현희 위원까지만 받아 주시지요.

○박준태 위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본인 언급이 나왔잖아요. 의견 표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전현희 위원 그러면 같이 받아 주십시오.

○유상범 위원 아니, 본인에 대한 비난이 나왔잖아요. 신상발언을 들어야지요, 이것은.

○위원장 정청래 지금 두 분씩 하셨지요?

○장경태 위원 제가 언제 비난을 했습니까? 제가 비난했습니까, 곽규택 위원님에 대해서? 곽규택 위원님이 이렇게 법사위원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고 제가 지적한 겁니다.

○위원장 정청래 장경태 위원님……

○곽규택 위원 저도 비난한 적 없어요.

○위원장 정청래 잠깐만요. 잠깐만요.

전현희 위원님 잠깐 손 내려 주시고요.

○장경태 위원 특검법 상정 심의를 왜 회피해야 됩니까, 제가? 김건희 여사 빙곤 포르노라고 한 게 회피해야 될 사유입니까?

○곽규택 위원 비난한 적 없어요.

○위원장 정청래 장경태 위원님 그리고 이쪽의 곽규택 위원님도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시라고요. 국회의원들이 국회법을 여기면 되겠습니까?

○곽규택 위원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제가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두 분씩 하셨기 때문에 좀 자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한 분씩만 더 하시겠습니까?

○전현희 위원 예, 저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신상발언 한번 주시고요.

○전현희 위원 먼저 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곽규택 위원님 먼저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곽규택 위원 지난번 본회의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저도 잘 기억하고 있고 여기 함께 계신 우리 법사위원님들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개인의 이름을 말했다고 해서 그 개인에 대한 어떤 모욕이나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분들의 신분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다 이 말씀은 제가 분명히 다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분들과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을 다루는 법사위에서 함께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회의 있을 때마다 이해상충 부분, 이해충돌 부분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어떤 내용으로 재판받고 계신지, 어떤 내용으로 수사 중인지 제가 틈 날 때마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 내용을 잘 들어 보시고 다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전현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마지막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희 위원 곽규택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 요청을 합니다. 사실 관계 왜곡이고 명예훼손 소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올 필요 없다’ 발언을 시작으로 집권 여당의 실세 의원들이 총공격을 개시하고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정치적 표적 감사를, 어느 날 특별조사국 12명의 조사관들이 권익위에 진입해서 감사를 개시했습니다. 10여 개 이상의 항목을 몇 달간 감사를 했는데 결국 감사위원회에서 저의 모든 개인 비위 혐의가 무혐의だ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의 최고의 결기구로서 여기가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추미애 장관 유권해석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법률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 감사를 해서 임기가 정해진 공직자를 사퇴시키는 것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대법원 판결에서 직권남용이다 이런 판결이 있었고요. 정역 2년의 실형을 당시 장관

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사퇴 압박 표적 감사가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직권남용, 불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이 감사를 누가 교사를 하고 지시했나. 당시 감사원의 유병호 사무총장이 ‘국회에서 지시했다’라고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국회는 민주당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것을 능히 알 수 있고 당시 법사위의 의결이 없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 한두 명이 했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정무위에서 윤한홍 간사가 권익위원회인 저에게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겠다’, ‘검찰에 수사를 요구하겠다’라고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속기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교집합을 정리를 하면 국민의힘, 적어도 윤한홍 의원이 저한테 감사원 감사를 교사 지시했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지만 적어도 속기록에 남아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원도 그것을 국민의힘에 의해서 했다는 걸 확인해 줬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는 이 의결에 있어서 저한테 모두 무혐의 결정을 했는데, 감사원법에 의하면 감사원에서 이것을 형사 고발을 할 때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당시에 저한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원법에 의하면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수사 요청을 하려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긴급성, 당사자 본인 조사 요건을 구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러한 요건을 전혀 구비하지 않고 수사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감사원의 수사 요청 조치는 무고에 해당합니다. 이미 무고이고 감사위원회에서 무혐의 나온 것을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곽규택 위원님이 국회 필리버스터를 하는 도중에 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에 대해서 만약에 민주당에서 곽규택 위원님을 뭔가 형사 고발을 하거나 검찰의 수사를 받게 한다면 곽규택 위원님 주장대로면 똑같은 이유로 이해충돌이고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곽규택 위원 다 같이 물러납시다. 다 같이 물러납시다. 다 같이 물러나요, 법사위에서.

○전현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정권에 의해서 탄압을 받은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동료들을 모욕하는 그런 발언 다시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청래 정리해 주세요.

○장경태 위원 유감 표명하십시오, 유감 표명.

○위원장 정청래 정리해 주세요.

됐습니다.

○송석준 위원 이건 의사진행발언으로 할 말씀이 아니잖아요.

○장경태 위원 유감 표명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유상범 위원** 이게 무슨 의사진행발언이에요?

○**곽규택 위원** 이게 무슨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관계도 없는 말을 가지고?

○**송석준 위원** 필리버스터를 계속하자고 해서 그때 하셨으면 됐잖아요. 그걸 왜 잘라 갖고 얘기를 합니까?

○**위원장 정청래** 잠깐만요.

송석준 위원님, 장경태 위원님, 곽규택 위원님 경고합니다. 위원장이 발언을 좀 그만하시라고 하면 그만하세요.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충분히 의사진행발언을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서면동의 요청으로 의사일정 제5항으로 간사 선임의 건을 추가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112조, 제71조에 따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의 건을 5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부결되면 못 합니다. 찬성 안 하십니까, 국민의힘?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 주세요.

(거수 표결)

없습니까?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기본이지 않아요? 간사를 먼저 선임하는 것이지……

○**위원장 정청래** 지금 손 들었는데 반대예요?

○**송석준 위원** 당연히 반대지요.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반대 한 명.

○**박은정 위원** 원래 그동안 표결해 왔어요!

○**유상범 위원** 몰라서 그래요? 모르시면 나가 계세요.

○**박은정 위원** 뭘 몰라요? 저 표결했었어요.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국회의 기본이 양당 간사가 먼저 선임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정청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으로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추가하는 변경동의 건에 대해서 이것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그냥 처리하고요 이의 있으면 표결 처리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박준태 위원** 안 자체를 못 받았습니다. 안 자체를 확인 못 했습니다.

○**송석준 위원** 여기 이의 있다니까 이의 좀 들어 보세요.

○**위원장 정청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준태 위원** 아니, 안 자체를 제시해 주십시오. 책상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이의 있다, 없다만 말씀하십시오.

○**박준태 위원** 안 자체를 보여 주셔야지요!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청래 소위 위원 선임의 건을 의사일정 제6항으로 추가하는 변경동의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렸지요?

○김용민 위원 국힘에서 하는 걸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유상범 위원 그러면 안건을 올려 놔야지……

○위원장 정청래 6항으로 추가하는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시 묻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송석준 위원 안건이 없다니까요, 안건이. 안건을 주고 얘기하셔야지.

○위원장 정청래 지금 안건 얘기했잖아요.

○송석준 위원 이의가 있어요. 이의를 들어 보시고……

○위원장 정청래 이의가 있습니까?

○송석준 위원 예, 이의가 있어요.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이의가 있으니까 그 이의를 들어 주셔야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정청래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사일정 제6항으로 추가하는 변경동의의 건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송석준 위원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들어 주시고 표결을 해야지. 그렇게 막 막무가내로 하나요? 막무가내로 가는 거 어디 있어요!

○서영교 위원 별 내용도 아닌데 그냥 넘어가세요, 좀!

○위원장 정청래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손 들어 주세요.

(거수 표결)

내려 주시고요.

반대하는 분 손 들어 주세요.

(거수 표결)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뭐 이렇게 지금 이상한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십니까?

○위원장 정청래 송석준 위원님, 거듭 경고합니다.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송석준 위원 그러면 발언 기회 주세요. 나 경고 안 먹게 이제 발언 기회 좀 주세요.
저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정청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0인, 기권 7인으로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회의를 일방적으로 진행하시면 안 되잖아요. 경고 자꾸 남발하지 마시고 의사진행발언 좀 주세요.

○서영교 위원 의사진행합시다. 할 일이 많아요.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주세요.

○위원장 정청래 자, 됐고요.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이러시면 안 되지요. 여기가 국민학교 무슨 학급회의회가 아

니잖아요!

○위원장 정철래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청원에 대하여 대체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실시하고 시간은 5분 정도 하면 되겠지요? 5분으로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현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하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이에요!

○위원장 정철래 전현희 위원님 발언하세요.

○송석준 위원 저 이거 별 세우는 겁니까?

○전현희 위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제가 법사위에서 수차례 지적을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채 해병 특검의 수사 대상의 가능성에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채 해병 사건에 대해서 이첩 보류 지시라든지 사건기록 회수 지시에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관여되어 있을 정황이 국회의 법사위 청문회에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채 해병 특검이 개시가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특검법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나 자신의 측근이 관련될 수 있는 그런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져 있는 이해충돌금 지원칙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명확히 위반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한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므로 그 거부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이 국민들 130만여 명 이상이 찬성을 한 상황에서 지금 법사위에 올라왔습니다. 국회법 제123조 4항에 따르면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접수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대통령에 대한 청원이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청원으로 올라와 있는 쟁점은 해병대 특검법 사안, 명품 뇌물수수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조작 사건, 전쟁 위기에 관한 평화통일 의무 위반, 일본의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관련 문제,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 대통령으로서 정해진,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거나 법률 위반 등의 의혹이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섯 가지 쟁점은 대통령의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 국가안보 수호 등 헌법상의 의무뿐만 아니라 본인 또는 가족에 의한 직권남용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 이므로 이를 국민의 힘이나 대통령실 쪽에서 주장하는 모독에 해당하는 내용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할 경우에는, 이는 당연히 국기문란 사안이고 대통령의 자격과 자질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므로 이번 법사위에서 한 점의 의혹 없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특검이나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밝혀내야 하고 법사위에서도 반드시 이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은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당연히 다룰 수 있는 청원입니다. 청원법 제6조에 따르면 ‘감사·수사·재판 등의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은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 다른 청원 처리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회의 의결에 따라서 당연히 법사위에서 청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청원에 대해서 참여한 국민이 130만여 명을 넘었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이 사안에 대한 염증성과 중요함을 그리고 국민들의 분노를 상징한다 생각합니다. 법사위에서는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이 국민의 명령을 당연히 받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발의에 대한 국민들의 명령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분 손 들어 주세요.

토론해 주세요.

○곽규택 위원 본 청원안에 포함된 청원의 주요 사유로 다섯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명품 뇌물수수, 주가조작, 고속도로 노선 변경 그리고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5개를 들고 있는데 국회법 123조에 의하면 수사·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은 접수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접수를 하지 않을 수가 있다’가 아니고 접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청원 사유 중에서 세 가지,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그리고 명품 뇌물수수, 주가조작, 고속도로 노선 변경 그리고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이 세 가지 사안은 수사나 재판 등에 간섭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유가 좀 특이합니다. 전쟁 위기 조장,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2일 본회의 표결을 거쳐서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해 수사해온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을 법사위에 회부시켰습니다. 그런데 돌연 법사위의 의사 안건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 안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어제 오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냈습니다. 해당 내용에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건을 상정하는 시기가 같은 날 어제 오후였습니다. 혹시 안건 상정에 북한 조선노동당의 담화가 참고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장경태 위원 적당히 좀 하세요. 작작 좀 하세요. 말이 됩니까, 그게? 국민 100만 명이 북한 주민이겠습니까?

○위원장 정청래 장경태……

잠깐만요, 발언 중지해 주세요.

○곽규택 위원 오늘과 같이 갑작스레 탄핵소추안 청원 관련……

○위원장 정청래 발언 잠깐 중지해 주세요. 마이크 잠깐 꺼 주세요.

○곽규택 위원 청문회 실시 안건을 상정한 것에 대한……

○위원장 정청래 발언 잠깐 중지해 주세요!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발언 끝나고 하셔도 돼요.

○위원장 정청래 잠깐만요. 국민의힘한테 유리한 얘기입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알기는 아는데……

○위원장 정청래 다른 위원님 질의시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소리를 지르거나 발언을 해서 발언에 방해를 주면 안 됩니다. 그것은 국민의힘 위원님도 그렇고 민주당 위원님도 그렇고 조국혁신당 위원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위원이 지금 발언 중에 있는데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중간에 끼어들어서 소리 지르거나 발언에 방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계속 발언해 주시지요.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잠깐 몇 개……

○위원장 정청래 계속 발언하세요.

○곽규택 위원 이러한 지적을 하는 이유에는 해당 청원안을 주도한 사람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전과 5범의 인물이라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인물이 선고받은 판결문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찬양·고무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적표현물을 반포·소지한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올라온 청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쟁 위기 조장, 평화통일 의무 위반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발표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담화에도 안보 불안을 조성하고 전쟁 분위기를 고취한다면 탄핵 청원 내용과 상당수 일치하는 워딩이라고 이해됩니다.

북한 노동당의 담화문에서 탄핵 청원을 운운하며 전쟁 분위기를 고취한다는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담겨 있는 탄핵 청원안 그리고 청원 주도자의 과거 전력에 따른 의문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진행되는 탄핵소추안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 안건은 의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이 조선노동당의 이중대임을 자인하는 것이거나 최소한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에 의해 대한민국 국회가 놀아난 치욕적인 순간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영교 위원 저런 이야기에 발언을 못 하게 하면 됩니까?

○장경태 위원 우리가 조선노동당 2중대라는 말을 들어야 됩니까, 위원장님?

○송석준 위원 동료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세요.

○위원장 정청래 잠깐만요.

국민의힘 위원님, 민주당 위원님들, 국민의힘 위원 입장에서는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건 국민들이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발언에 대해서 못마땅하거나 불만 있으면 그리고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도움을 줄 말씀이 있으면 의사진행발언을 손 들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동료 위원들 발언할 때는 좀 자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급적 대체토론은 토론과 관련된 내용을 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조선노동당 얘기도 나오고 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 청원에 관한 국회법을 잠깐 여러분들께 먼저 주지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25조(청원 심사·보고 등)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이나 전문위원을 현장이나 관계 기관에 파견하여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청원인·이해관계인 및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국회법 제125조제5항, 이게 중요합니다.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90일 이내에 이것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하는 것이 직무유기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60일의 범위 이내에 한 차례 더 심사기간 연장을 할 수 있고요. 이러한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못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심사기간 추가 연장을 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청원이 들어왔고 청원이 성립됐기 때문에 9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 탄핵이라는 매우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국회법 65조 1항에 따라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법에 따라서 그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고요.

이 청원에 대한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서 모아지는 의견이 있으면 이건 의장에게 보고해야 되고요. 또한 국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정부가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 처리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절차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하지 않은 국회가 그 임무를 방기한 것입니다. 국회법에는 반드시 90일 이내에 처리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국회법에 따라서 그 의무사항을 지금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청원이 지금까지는 별것 아니었다 생각할지라도 국회법에는 강제조항,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90일 이내에 이것을 의장에게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우리 법사위원들이 직무유기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토론을 하는 것이고요. 대체적으로 올라온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지 절차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이러는 것은 가급적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분 또 있습니까?

주진우 위원님 토론해 주시지요.

○주진우 위원 국민의힘 주진우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청원에 대해서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현재 법률 규정상 말이 안 됩니다. 일단 먼저 탄핵소추 재적의원 수, 탄핵소추를 하려면 재적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발의를 해야 되고 본회의 의결로 법사위에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상 당연히 탄핵소추를 해서 법사위에서 조사하려면 그만한 법적 요건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

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청원, 그것도 법률적으로 법리적으로 내용이 맞지 않는 청원서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이런 절차를 우회해서 결국은 사실상 탄핵소추를 위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 자체가 헌법 위반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청원안이 발의됐으나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위에 회부된 상태에서 폐기가 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읽어 주신 조문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 조문에 그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청원을 국회로 이송하거나 정부로 이송해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그 청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탄핵소추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국회라는 국회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헌법기관인 개별 국회의원 재직의원 과반수가 다 동의를 해야 비로소 그 청원의 내용이 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청원의 내용은 국민 목소리의 하나로서 참고해서 개별 의원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이지 이걸 부쳐서 누가 어떻게 조치를 하며 청문회가 끝나면 법사위에서 무엇을 의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국회에 보고를 한다고 한들 국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본회의에 부의된다고 해서 처리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이게 얼마나 코미디인지 알 수 있느냐면, 일반 국민께서 이 청원을 하셨기 때문에 청원 내용에 보면 법리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청문회 개최하겠다고 하면서 증인까지 신청을 해 놨는데, 예를 들어 도이치모터스 사건 증인도 여기 신청을 쭉 해 놨더라고요.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대통령이 재직 중에 직무에 관해서 한 내용입니까? 기본적으로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나라 최고의 법률 감독기관인 법사위에서 버젓이 이런 안건이 걸려지지 않고 올라올 수 있습니까? 그것도 소위도 안 하고 그대로 진행하자는 겁니까? 여기 법조인들 많이 계신데, 도이치모터스 사건 대통령의 탄핵 사유입니까? 결혼 전에?

○ **김용민 위원** 수사 외압이지요.

○ **전현희 위원** 되지요.

○ **주진우 위원** 그게 되지 않고요. 그리고 수사 외압과 관련된 증인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발언할 때 끊지 마십시오. 원래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방해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에.

○ **전현희 위원** 질문을 하니까 답을 했지요.

○ **서영교 위원** 왜 물어봐요, 그러면? 물어보지를 말든가.

○ **주진우 위원** 아니, 위원들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정청래** 주진우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고 다른 분들은 좀 조용히 해 주세요.

○ **주진우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청원에 대한 조사 절차는 아예 법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에 대한 진술을 듣거나, 아까 읽어 주셨지요? 거기에 누가 증인 신청하라는 절차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거 법에도 맞지 않는 증인 신청하겠다고 하는 것 저는 이것은 무용한 절차라고 생각하고 아예 응할 필요도 없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청원에는 불수리 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청원의 불수리

사유에는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안은 수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지요. 왜냐하면 재판 중이나 수사 중인 사안에서, 다 청원받아서 하면 그 청원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재판 절차나 수사 절차는 사법작용의 일환으로서 사법의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수사 중이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청원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원한 내용 보니까 대부분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에요. 증인 신청 관련해서 순직 해병에 대한 사건,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특검법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지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서 저번에 민주당 단독으로 입법청문회까지 다 해 가지고 그 증인들 다 불러서 증인들 망신 주기 다 해 놓고 지금 와서 또다시 똑같은 이슈로 이 똑같은 증인들을 불러서 또 한다고요?

우리 법사위의 일반적인 법률검토의 수준이 저는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리를 좀 더 정확히 검토하도록 소위에 회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잘 들었고요.

자꾸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국회법 해설을 또 해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65조 1항 ‘위원회(소위원회 포함한다)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을 부정하는 발언은 하시는 것은 자유인데 그 절차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 청원안은 자동으로 법사위에 회부되어 있고 대체토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회부가 되어 있어요, 지금. 그리고 우리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정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상정하는 조건이 안 맞다든가 이게 잘못됐다든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미 상정돼서 토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지금 토론에 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안건 자체가 무효라는식으로 얘기하면 토론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절차에 따라서 본인도 토론에 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말씀을 들어 주세요.

○위원장 정청래 이건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지적이 잘못됐다고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는 거예요.

○주진우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 진행에 관한 발언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자, 토론해 주세요.

○이건태 위원 부천시병 출신 이건태 위원입니다.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계속!

○송석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들어 주세요.

○이건태 위원 대체토론할 수 있도록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유상범 위원 가만히 계셔 보세요.

○이건태 위원 대체토론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지 않습니까?

○서영교 위원 하고 나서 얘기하세요.

○이건태 위원 대체로론 발언권을 받았지 않습니까? 제가 대체로론 발언권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이건태 위원님, 잠깐 발언 중지해 주시고.

유상범 위원님도 경고합니다.

지금 발언이 시작됐잖아요, 토론이. 왜 자꾸 끼어듭니까?

○유상범 위원 끼어든 게 아니라 발언하기 전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위원장 정청래 끼어든 게 아니고 그러면 안 끼어든 거예요? 끼어들었잖아요!

○유상범 위원 말씀하시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해 줘야 된다고.

○위원장 정청래 제가 민주당 위원님한테도 주의 주고 경고 다 했어요.

이건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의사진행발언은 들어 주셔야지요.

○주진우 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해 뒀습니다.

○이건태 위원 채 해병 사건에 대해서 경북경찰청에서 7월 19일 날 사망사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7월 30일 날 국방부 수사단에서 수사기록을 이첩했는데 이첩된 기록이 다시 회수가 됐습니다.

이첩의 법률효과는 이첩이 되는 순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경북경찰청은 수사에 착수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대통령실이 개입해서 결국 탈취를 했는데 이 탈취의 수사적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수사를 하지 말라, 직무유기를 하라 그런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직무유기를 지시한 것이고 직권남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는 결국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뻔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뻔한 수사 결과가 발표된 것은 지금도 여전히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이 작동되고 있다 이것을 실증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니까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어요. 그 당시 현장 상황은 7월 14일에서 7월 18일까지 호우경보가 발효되어 전년 동기 대비 34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린 상황이었다. 사고 장소인 내성천은 하천 바닥이 고운 모래로 인해 밭이 쉽게 빠지고 흙탕물 유입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안전장구 없이 하천 본류에서 수중 수색을 할 경우 급류에 휩쓸려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그 당시 포7대대장이 이 위험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4장 정도의 현장 사진을 위에 보고했는데 정말 물이 방방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사단장은 카톡으로 12장의 사진을 보고받는데 그 12장의 사진에 대해서 ‘훌륭하게 공포가 이루어졌구나’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12장의 사진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진, 가장 핫한 사진은 장병들이 물에 들어가서 수중 수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이 사단장은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뻔한 거짓말을 경북경찰청이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12장의 사진 중 수중 수색 사진 1장을 특정해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했는데 이 결정이야말로 대통령실의 대통령의 수사 외압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 이것을 말해 주는 상징적인 보고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사위원회에서는 130만이나 되는 국민들이 요구한 이 국민동의 청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중인을 불러서 청문을 하고 조사도 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국민 130만여 명이 요구한 이 청원을 어떤 명분으로 어떤 논리로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런 명분과 그런 논리는 전부 법기술자들이 하는 애드리브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철저히 무시하고 국민의 요구를 저희가 받아서 반드시 국민들의 한을 국민들의 억울함을 국민들의 충족되지 못하는 정의감을 우리 법사위에서 만족시켜 드려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주진우 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의사진행발언은 당분간 안 드리겠습니다.

토론하실 분 손 드세요.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정청래 송석준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말씀 좀 드릴게요.

○송석준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건데 그것은 들으셔야지요.

○위원장 정청래 송석준 위원님이나 유상범 위원님이 위원장이 아닙니다.

송석준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유상범 위원 그래서 들어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청래 토론해 주세요.

○주진우 위원 위원장님의 절차 진행에 이의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청래 토론해 주세요.

○송석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안 주실 겁니까?

○위원장 정청래 예.

○송석준 위원 제가 한 다음에는 주시지요.

○위원장 정청래 일단 토론하세요.

○송석준 위원 존경하고픈 위원장님, 식사 잘 하셨지요?

○위원장 정청래 발언을 중지합니다.

○송석준 위원 왜 중지합니까?

○위원장 정청래 국회법 145조 2항은 ‘국회의원이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 발언을 중지할 수 있고 퇴장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이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인가요?

○위원장 정청래 국회법 읽는 거예요.

○유상범 위원 아, 있어요. 그런데 뭐가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거예요?

○위원장 정청래 지난번에도 ‘존경하고픈’ 얘기 하셨지요?

○송석준 위원 예.

○위원장 정청래 계속하실 겁니까?

○ 송석준 위원 예.

○ 위원장 정청래 위원회의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제가 판단합니다.

○ 송석준 위원 왜 판단하지요?

○ 위원장 정청래 그런 말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주진우 위원 위원 발언을 막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에.

○ 유상범 위원 그렇게 자의적으로 위원 발언을 막을 수 없지요.

○ 송석준 위원 자의적으로 회의를 진행해도 되는 겁니까?

○ 유상범 위원 국회법의 질서라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 위원장 정청래 더 이상 토론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 유상범 위원 위원장이 끊을 수 없어요.

○ 송석준 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 위원장 정청래 박은정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 유상범 위원 국회법 60조 1항에는 끊을 수가 없어요.

○ 주진우 위원 대체토론 신청합니다.

○ 유상범 위원 대체토론 하겠습니다.

○ 박은정 위원 국민의힘 주진우 위원이 ‘국회가 이 청원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고, 정부는 못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번 청원이야말로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청원한 것입니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대통령의 탄핵을 소추할 수 있습니다. 헌법을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작전 중 순직한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에 대한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 브리핑이 어제 있었습니다.

○ 송석준 위원 아니, 대체토론을 왜 방해하는 겁니까?

○ 박은정 위원 경찰이 국방부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지 1년 만에 나온 결과입니다만 그 내용에 많은 국민들이 다시 분노하고 있습니다.

수중 수색의 위험성을 경고한 현장지휘관의 보고가 묵살됐고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 가슴장화를 착용하라는 임성근 사단장의 발언이 있었음에도 결국 사단장은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

채 해병 순직 1주기를 앞둔 오늘 오전 공정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에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너무나도 비정하고 무도한 정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 채수근 해병 어머니의 외침에 이제는 우리가 답해 줘야 합니다. 애타는 어머니의 절규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의 정부는 국가의 역할과 책무를 해태하는 반헌법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무엇이 두려워서 이장폐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인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순직한 젊은 청년의 죽음 앞에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번 청원의 내용을 심도 있게 토론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청래 잘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분 있습니까?

○**유상범 위원** 다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서영교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서영교 위원** 우리가 예측한 그대로였습니다. 임성근만 쑥 빼졌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성근을 구하려고 나섰다. 대통령이 임성근을 구하기 위해 곳곳에 전화를 한다.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는 국방부장관에게까지 비화폰이 아닌 자기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다. 기밀이 노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자기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다. 대통령은 왜 이렇게 난리를 칠까? 임성근 사단장 하나 구하려고 난리를 치는 것이다. 임성근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도대체 임성근을 왜 이렇게 구하려고 하는 걸까?

대통령만일까? 대통령의 움직임에 따라서 대한민국 이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국방부장관이 국방부차관이 군사보좌관이, 대통령실에 있는 국방비서관이 공직기강비서관이 국가 수사본부까지 동원해서 경북경찰청에 이첩되었던 사건기록을 회수해 왔습니다. 그럴 때 국민은 다 알았습니다. 대통령이 왜 저러지? 임성근 구하려고 그러는 거야. 왜 임성근을 저렇게 구하려고 하지? 왜 그러지? 도대체 대통령이 왜 그러지? 나라를 지켜야 되는 대통령이 왜 저러지? 임성근하고 무슨 관계지? 임성근을 구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나? 도대체 임성근하고 무슨 관계지?

02-800-7070으로 전화가 온 이후에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화들짝 놀라서 움직입니다. 02-800-7070 번호는 뭐지요? 우리가 용산 대통령실 번호를 구글에 다 찾아봤더니 02-800-7070은 없어요. 그런데 800-7070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대통령비서실이냐, 안보실이냐 물었더니 안보실장도 비서실장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화, 대통령이 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했을까요? 그때 의심했는데 국힘당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임성근 구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 6명도 죄가 없잖아요. 물에 빠져서 다른 사람 구하려고 했던 그런 소대장은 어떻게 합니까’라고 했는데 어김없이 임성근만 빼지고 그들 다 송치됐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를 지켜야 되는 대통령이 임성근 사단장 하나 구하려고…… 임성근 사단장은 부하를 지켜 줬어야지요. 안전하게 했어야지요. 대한민국 국민이 묻습니다, 왜 구명조끼 안 입힌 채로 거기에 넣느냐. 구명조끼만 입혔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달이 일어났어요.

내 아들이 임성근의 손아귀에, 나라가 시키면 죽어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까? 임성근은 그 와중에도 군인은 나라가 시키면 죽어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헛소리, 망발을 찍찍 해댔는데 그것을 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감싸고 돌지요?

그런데 끝내는 경북경찰청에서 임성근 하나만 쑥 빼어요. 제가 오늘 이야기합니다. 경북경찰청, 수사 대상입니다. 경북경찰청장, 수사 대상이고요. 그리고 이첩된 기록, 접수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고스란히 회수시켜 줬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나라 지켜라, 그런데 나라는 안 지키고 임성근 하나를 지킵니까,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내 새끼 군에 보냈는데 그렇게 죽어 돌아오게 해야 됩니까? 그러고는 이 국회에서 그걸 또 방어합니까?

제가 오늘 팩트 체크 한번 합니다. ‘박정훈 대령은 수사권이 없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박정훈 대령이 수사권이 없습니까?

○**유상범 위원** 예.

○**서영교 위원** 수사단장이 수사권이 없습니까?

○**유상범 위원** 없어요.

○**서영교 위원** (폐널을 들어 보이며)

자, 내가 오늘 체크해 줄게요.

군사법원법 228조 읽어 보세요.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1항 ‘수사하여야 된다’라고 있는데 뭘 수사권이 없어요?

○**유상범 위원** 사망사건에는 수사권이 없어요.

○**곽규택 위원** 예외를 잘 보세요.

○**유상범 위원** 예외를 잘 봐요.

○**서영교 위원** 2항, 2항 봐요.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법조문이에요.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하다고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그것을 경찰로 이첩한다’.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상범 위원** 수사권이 있는 범죄.

○**서영교 위원** 아니, 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뜨끔뜨끔 하지요? 왜? 그날 수사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유상범 위원** 애초부터 수사권이 없어요.

○**송석준 위원** 법을 좀 똑바로……

○**서영교 위원** 또 이야기할게요. 이번 청원에는 재판에 간섭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 수사 중인 것은 청원할 수 없다, 어디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어디 와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청원을 하면……

○**유상범 위원** 청원법 6조 찾아보세요.

○**서영교 위원** 그 청원 보세요, 거기에.

○**유상범 위원** 청원법 6조 보세요.

○**서영교 위원** 수사하는 내용에 그게 없다, 어디 있어요? 어디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유상범 위원** 청원법 6조 2호.

○**서영교 위원** 내 아들을 군대 보냈는데 내 아들이 그렇게 떠내려가서 못 돌아오면 그래도 이럴 거예요? 그래도 이럴 거예요?

○**장동혁 위원** 시간 지났습니다.

○**송석준 위원** 흥분하지 마시고요.

○**서영교 위원** 흥분을 어떻게 안 합니까?

○**유상범 위원** 질서유지권 나올 때 됐어요.

○**서영교 위원** 대통령이 나라를 구하고 대통령이 국방의 안전을 추구해야 하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하고 임성근은 도대체 무슨 관계예요? 이종호라고 하는 블랙펄 인

베스트 대표가 있다던데 그 추가조작에 관여된 그 사람과는 또 무슨 관계예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정리해 주세요.

○서영교 위원 이상입니다.

.....

○송석준 위원 대체토론 신청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토론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고요.

○송석준 위원 아니요, 대체토론 더 해야 됩니다.

○장동혁 위원 대체토론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리고 같은 동어 반복이 많이 되고 있고요.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중단을 시킬 권리가 없어요, 위원장님한테.

○위원장 정청래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졌으므로……

○유상범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대체토론 충분히 안 된 것 같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청래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장동혁 위원 위원장님, 토론하겠습니다, 대체토론.

○위원장 정청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장동혁 위원 대체토론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위원장 정청래 전현희 위원님 등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송석준 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유상범 위원 그게 안 돼요!

○위원장 정청래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71조 규정에는……

(「그래서 우리가 대체토론 계속하자는 것 아니에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청래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대체토론 종결할 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상범 위원 잠깐만.

○송석준 위원 저 대체토론 아직 다 못 했어요, 아직.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청래 표결에 앞서서……

○송석준 위원 표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정청래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청래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송석준 위원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유상범 위원 직권남용하는 거예요!

○ 송석준 위원 직권남용이야, 당신, 지금!

○ 위원장 정청래 당신?

○ 송석준 위원 당신!

○ 곽규택 위원 토론할 기회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 유상범 위원 이것 지금 잘못하는 거예요.

○ 곽규택 위원 토론할 기회를 줘야지.

○ 유상범 위원 법에도 없는 규정을, 위원장이 그것을 적용합니까?

○ 곽규택 위원 위원장이 그럴 권한이 없어요, 위원장이.

(장내 소란)

○ 위원장 정청래 앉으세요. 앉으세요.

○ 곽규택 위원 위원장이 뭔데 그런 결정을 해요!

○ 위원장 정청래 앉으세요! 앉으세요!

○ 박준태 위원 위원장에게 권한이 없습니다.

○ 위원장 정청래 앉기 싫으면 계속 서 있어요.

○ 곽규택 위원 토론해야 될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정청래 계속 서 계세요.

○ 송석준 위원 이렇게 직권남용을 하는 위원장을 우리가 방치합니까?

직권남용죄를 지금 저지른 거예요!

○ 위원장 정청래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위법행위 하지 마세요!

○ 위원장 정청래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 유상범 위원 안 돼요. 이것은 위원장님이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 박준태 위원 위원장님에게 표결……

○ 위원장 정청래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 박준태 위원 토론 종료할, 표결 할 권리가 없습니다.

○ 위원장 정청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범 위원 권리가 본인은 없어요.

○ 송석준 위원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위법행위입니다. 직권남용이에요, 직권남용!

○ 위원장 정청래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준 위원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 유상범 위원 이것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 위원장 정청래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 유상범 위원 이게 법이에요? 멋대로지. 이건 법대로가 아니야, 멋대로지요.

○ 위원장 정청래 없습니까?

○ 송석준 위원 직권남용행위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유상범 위원** 그것을 아세요.

(일부 위원 퇴장)

○**위원장 정청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0, 기권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제108조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체토론을 마쳤으므로 해당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할 순서이나 해당 청원이 갖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법사위 차원의 청문회를 실시한 이후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3.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서류제출요구의 건

4.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5시06분)

○**위원장 정청래** 의사일정 제2항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4항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까지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와 관련된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청문회는 간사님과 협의를 거쳐 작성 배부해 드린 실시계획서(안)과 같이 7월 19일과 26일 2차에 걸쳐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2항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이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항 서류제출요구의 건입니다.

청문회 관련 서류제출 요구는 국회법 제128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국회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각 의원실로부터 접수된 서류제출 요구는 23개 기관 266건입니다. 이상의 요구에 대해 2024년 7월 16일 화요일 18시까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써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항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2024년 7월 19일과 26일에 실시되는 청문회에 필요한 증인 등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청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의 구체적 명단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참고인 명단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김건희 여사 등 총 39인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방금 채택된 증인은 불출석 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증언감정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출석 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증언감정법 제12조(불출석 등의 죄)를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도 제1항의 형과 같다'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5. 간사 선임의 건

(15시10분)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교섭단체를 대표해서 위원장과 위원회 운영을 협의할 간사를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6월 12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선임한 데 이어 오늘은 국민의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임할 대상 위원님들이 안 계시는군요. 그러면 이 안건은 오늘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6.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위원장 정청래 의사일정 제6항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도 상정합니다.

마찬가지로 5항에 이어 6항도 위원 선임을 해야 되는데 그 대상자분들이 의견이 지금 없고 불출석, 퇴장하셨기 때문에 이 안건도 다음에 추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증인 및 참고인 명단

증인(39인)

성명	직업	사유	출석일
신원식	국방부장관	채 해병 사망사건 관련 주무부처 장관	2024. 7. 19.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채 해병 사망사건 당시 해병대사령관으로 수사 외압 의혹의 당사자	2024. 7. 19.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채 해병 사망사건 당시 해병대 1사단장으로 사망사건의 핵심 당사자	2024. 7. 19.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 당사자	2024. 7. 19.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 당사자	2024. 7. 19.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 당사자	2024. 7. 19.
김형래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 당사자	2024. 7. 19.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 당사자	2024. 7. 19.
박경훈	국방부조사본부장대행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 당사자	2024. 7. 19.
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 당사자	2024. 7. 19.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 당사자	2024. 7. 19.
임상규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	채 해병 사망사건 관련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임성근 사단장 불송치 처분 결정 과정 질의 필요	2024. 7. 19.
박상현	해병대 제1사단 제7여단장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 당사자	2024. 7. 19.
최주원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 당사자	2024. 7. 19.
박종현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 당사자	2024. 7. 19.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 당사자	2024. 7. 19.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2024. 7. 19.

성명	직업	사유	출석일
		받고 있는 핵심 당사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 당사자	2024. 7. 19.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 당사자	2024. 7. 19.
임기훈	국방대학교 총장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관계자	2024. 7. 19.
이윤세	해병대 공보정훈실장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관계자	2024. 7. 19.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 당사자	2024. 7. 19.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핵심 당사자	2024. 7. 26.
김건희	대통령 부인	도이치모터스, 디올백 수수 사건 핵심 당사자	2024. 7. 26.
최은순	대통령 장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핵심 당사자	2024. 7. 26.
송윤상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도이치모터스 1심 재판 관련 공판 검사	2024. 7. 26.
염신일	도이치모터스 회계책임자	도이치파이낸셜 주가 발행 및 관리자	2024. 7. 26.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핵심 당사자	2024. 7. 26.
민태균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임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핵심 당사자	2024. 7. 26.
이동훈	신한투자증권 직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핵심 당사자	2024. 7. 26.
김기현	전 증권사 직원	김건희 여사 계좌 관리한 인물로 사건의 핵심 관계인	2024. 7. 26.
이정필	서울구치소 수감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핵심 관계자	2024. 7. 26.
최재영	목사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사건 핵심 당사자	2024. 7. 26.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사건 핵심 당사자	2024. 7. 26.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사건 핵심 당사자	2024. 7. 26.
최정묵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사건 관련 권익위 심의 관련	2024. 7. 26.
유경옥	대통령실 행정관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사건 핵심	2024. 7. 26.

성명	직업	사유	출석일
		당사자	
정지원	대통령실 행정관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사건 핵심 당사자	2024. 7. 26.
조연경	대통령실 행정관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사건 핵심 당사자	2024. 7. 26.
송현숙	국가보훈부 사무관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사건 핵심 관계자	2024. 7. 26.

참고인(7인)

성명	직업	사유	출석일
김정민	변호사	채 해병 사망사건 관련 박정훈 대령 항명사건의 변호사로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참고인	2024. 7. 19.
김규현	변호사	채 해병 사망사건 관련 박정훈 대령 항명사건의 변호사로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참고인	2024. 7. 19.
김경호	변호사	채 해병 사망사건 관련 변호사로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참고인	2024. 7. 19.
구용희	CBS 논설위원	채 해병 사망사건 관련 취재한 상황에 대한 설명	2024. 7. 19.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관련 사건 취재해 온 기자	2024. 7. 26.
장인수	전 MBC 기자	관련 사건 취재해 온 기자	2024. 7. 26.
송원근	경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핵심 관계자	2024. 7. 26.

○출석 위원(18인)

곽규택 김승원 김용민 박군택 박은정 박준태 박지원 서영교 송석준 유상범
이건태 이성윤 장경태 장동혁 전현희 정청래 조배숙 주진우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전문위원 한석현
전문위원 박동찬
전문위원 이화실